

우리나라 商標法의 主要 内容

商標는 商品 및 企 의 얼굴…企 戰 的

第3章 出願

1. 期 間

(1) 意義

商標를 出願하면 登錄할때까지의 不服抗告나 紛爭에 의한 審判等 行政節次에 있어서 一定한 期間과 期日을 定하여 그 期間내에 業務를 處理한다.

「期間」이라 함은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이 一定한 出願·審查·審判等의 節次를 跳을 時間을 말하며 「期日」이라 함은 事件을 處理하기 위하여 當事者 또는 그 代理人이 特許廳의 審判官·審查官의 앞에서 그 立會下에 節次를 跳는 時期를 말한다.

期間에는 法律의 规定에 의한 法定期間과 特許廳長·審判官·審查官이 指定한 指定期間이 있으며 事件處理의 迅速處理를 위해 一定行爲를 一定期間內에 하기 위한 「行爲期間」과 一定한 行爲를 하기 위하여 一定한 期間까지 猶豫하는 「猶豫期間」이 있다. 商標法에서는 期間 및 期日에 關한 规定을 特許法에 準用하여 施行토록 하고 있다(商標法 第7條)

(2) 期間의 計算

商標業務를 處理하는데 必要한 期間의 計算에 있어서 商標法에 依據하여 發하는 命令에 의한 期間의 計算은 아래와 같다(商標法 第7條 特許法第16條).

② 期間의 初日은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期間이 午前 零時로부터 始作될 때에는 例外로 한다.

④ 期間을 定함에 있어서 月 또는 年으로 할 때에는 역에 따른다.

⑤ 月 또는 年의 처음으로부터 期間을 起算하지 아

니한 때에는 最後의 月 또는 年에서 그 起算日에 該當한 날의 前日로 期間이 滿了한다. 다만, 月 또는 年으로 定한 境遇에 最終의 月에 該當日이 없을 때에는 그 月의 末日로 期間이 滿了한다.

⑥ 特許에 關한 出願請求 其他의 節次에 關한 期間의 末日이 公休日에 該當될 때에는 그 翌日을 그 期間의 末日로 한다.

(3) 期間延長 및 期日의 變更

商標의 業務處理는 法定期間과 指定期間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外國의 境遇와 遠距離 그리고 交通이 不便한 地方에 있는 者를 위하여 期間의 延長을 請求를 할 때와 그 必要에 의하여 特許廳長의 職權으로 “法定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또한 特許廳長·審判長·審查官은 節次를 跳기위한 指定期間을 定하였을 때에는 請求 또는 職權에 의하여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으며 審判長과 審查官은 指定한 期日에 關하여도 역시 請求 및 職權에 의하여 期日을 變更할 수 있다(商標法第7條 特許法第31條)

이와 같은 期間에 있어서 法定期間은 原則적으로 30日을 延長할 수 있으나 試驗結果豫測의 時日을 要할 때 등에는 그 所要期間에 상당한 期間을 연장할 수 있고 또한 當事者가 外國에 居住하는 경우에는 3月以內의範圍에서 延長할 수 있다(特許法施行規則第19條1項).

(4) 期間의 解怠

商標의 出願登録等 節次를 跳는 法定期間이나 指定期間이 經過하면 節次가 無效되거나 또는 出願이 拒絕되는 경우등 不利益을 받게됨은 물론 失權 되는 때가 있기도 한다.

商標의 出願·請求 및 其他의 節次를 跳은 者가 그 後의 行爲에 대하여 指定期間을 解怠하거나 登錄을 받을

解說(8)

必需要件



金 寬 衡

〈本會 研修部長〉

때에 納付하여야 할 登錄料를 約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이 別途로 定한 規定을 除外하고는 特許廳長이 出願請求 및 其他의 節次를 無效로 할 수 있다. 그러나 無效로된 경우에도 그 期間의 懈怠가 天災地變 其他 不可避한 것으로 認定될 때에는 그 事由가 그친 날로부터 14日以內, 그 期間滿了後 1年以內에 請求에 의하여 特許廳長이 懈怠의 結果를 免除하게 할 수 있다(商標法第7條 特許法第32條).

(5) 期間의 懈怠와 追完

商標出願等의 節次에 있어서 法定期間이나 指定期間이 經過한 경우에도 天災地變等의 事由일때는 이를 認定하여 아울러 追後補完하는 制度를 두고 있다.

天災地變 其他 不可避한 事由로 因하여 特許에 關한 出願·請求 또는 節次를 밟을 者에게 歸費할 수 없는 事由로 因하여 抗告審判을 請求할 수 있는 期間 또는 이 法에서 準用하는 民事訴訟法 第414條(即時抗告)의 規定에 의한 再審期間과 再審請求期間(商標法第52條1項)을 충수할 수 없을 때는 그 事由가 그친 날부터 14日以內에 그 期間이 滿了後 1年以內에 限하여 懈怠한 節次를 追完할 수 있으며 다만 商標異議申請期間은 例外로 한다(商標法第7條 特許法第33條).

2. 書類의 送達

(1) 意義

「書類의 送達」이라 함은 商標의 節次에 있어서 特許廳 또는 當事者一方이 他方의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에게 書類의 內容을 알리기 위하여 一定한 方式으로 書類를 交付하는 行爲를 말한다(商標法施行令第8條 特許法施行令第4條).

紙上研修

이달의 目次

第3章 出願

1. 期間
2. 書類의 送達
3. 商標出願의 節次

〈다음號에 繼續〉

(2) 送達方法

① 送達의 時期와 規定

商標에 있어서 特許廳에 提出하는 出願書·請求書 및 其他의 書類는 特許廳에 到達한 날로부터 그 效力이 發生하며 이 出願書·請求書 및 其他의 書類를 郵便으로 特許廳에 提出하는 경우와 出願人 當事者 利害關係人等에 送達하는 效力의 時期 그리고 方法은 아래와 같다(商標法 施行令第8條 特許法施行令第4條6條).

② 郵便物의 通信日附印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표시된 날, 다만 그 표시된 날이 不分明한 경우에는 郵遞局에 제출한 날을 郵便物의 受領證에 의하여 증명한 날.

③ 郵便物의 通信日附印이 불분명하거나 郵便物의 受領證이 없는 경우에는 特許廳에 도달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商標法 및 商標法 施行令의 規定에 의하여 送達할 書類는 特許廳에서 그 當事者 또는 그 代理人이 직접 이를 受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登記郵便으로 發送하여야 한다.

⑤ 特許廳에서 當事者 또는 그 代理人이 직접 書類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受領者로부터 그가 受領日字 및 성명을 記載捺印한 受領證을 받아 비치하고 登記郵便으로 發送하는 경우에는 郵遞局의 登記郵便物의 受領證를 비치하여야 한다.

⑥ 審判·抗告審判·再審·通常使用權許與 및 商標權取消에 관한 審決文 또는 決定文을 登記郵便으로 送達할 경우에는 郵便送達報告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送達에 있어서는 商標法 또는 商標法施行令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送達을 받을 자에게 그 書類의 謄本을 交付하여야 하며 送達 書類의 提

出에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調書의 謄本이나 抄本을 교부하여야 한다. 行爲能力 缺格者(特許法 제21조제1항)에게 하는 송달은 그 法定代理人에게 하여야 한다.

④ 數人이 공동하여 代理權을行使하는 경우에는 그 중 1人에게 送達하던 된다.

⑤ 教導所 또는 拘置所에 拘束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所長에게, 警察官署에 留置된 자에 대한 送達은 그 警察官署의 長에게 한다.

⑥ 送達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營業所로 한다.

⑦ 送達을 받을 자가 정당한 事由 없이 送達받기를 拒否함으로써 送達할 수 없게 된 때에는 發送을 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② 公示送達

商標에 關한 書類를 送達하고자 하거나 또는 送付하였어도 送達을 받은자의 住所 또는 營業所가 不分明하여 送達할 수 없을 때에는 商標公報에 게재하여 公開하는 公示送達의 方法에 의한 公示送達을 한다(商標法施行令第7條 特許法施行令第7條).

이때에 公示送達은 送達할 書類를 받을 者에게 어느 때라도 交付한다는 뜻을 商標公報에 掲載하여 受領인이 언제든지 交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公示送達에 있어서 最初에는 掲載後 2週日이 經過하면 效力이 發生하고 同一當事者에 대한以後의 公示送達은 商標公報에 掲載한 다음날부터 그 效力이 發生한다(商標法施行令第8條 特許法施行令第7條).

③ 在外者에 대한 送達

商標에 關한 書類를 外國에 있는 在外者로서 商標管理人이 있는 때에는 그 在外者에게 送達할 書類를 商標管理人에게 送達하여야 하고 在外者로서 商標管理인이 없을 때에는 그 在外者에게 送達할 書類를 航空郵便으로 發送하여야 하며 이경우는 發送한 날에 送達된 것으로 보고 있다(商標法施行令第8條 特許法施行令第8條).

(3) 節次의 停止와 請求

商標處理에 있어서 節次의 「停止」에는 中斷과 中止가 있으며 이는 審查審判節次 係屬中에 當事者 또는 審查官이 法律上의 審查나 審判을 進行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말하며 「請求」는 商標에 關한 證明・登錄證의 寫本이나 抄本等 또는 書類의 閱覽・謄寫等을 特許廳에 申請하는 것을 말한다(商標法第7條 特許法第37條)

① 節次의 中斷

「節次의 中斷」이라 함은 一定한 事由에 該當하여 出願人 其他 利害關係人이 節次를 밟을 수 없을 경우에 새로이 節次를 밟을 수 있는 者가 있을 때까지 節次遂行權을 賦失한 出願人等 利害關係人의 利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節次進行을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停止하는 것을 말하며 그 中斷事由는 다음과 같다(商標法第7條 特許法第8條 同施行令第9條).

① 當事者가 死亡한 때

② 當事者인 法人이 合併에 의하여 消滅한 때

③ 當事者가 節次를 밟을 能力を 賦失한 때

④ 當事者인 法定代理人이 死亡하거나 그 代理權을 賦失한 때

⑤ 當事者의 信託에 의한 受託者の 任務가 終了한 때

⑥ 在外者の 特許管理人이 死亡하거나 그 代理權을 賦失한 때

⑦ 共有時 選定한 代表者(特許法第29條項但書)가 死亡하거나 그 資格을 賦失한 때

이러한 中斷事由가 있다라도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에게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節次가 中斷되지 않는다.

② 節次의 中止

「節次의 中止」라 함은 天災地變과 같은 不可抗力으로 因하여 當事者나 審查官 또는 審判官에게 節次를 밟을 事項에 장애가 있다면 다른 節次關係上 節次를 遂行할 수 없을 때 또는 不適當한 경우에 法律의 規定이나 審查審判에 의하여 節次를 停止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에 特許廳長 또는 審判長은 이를 當事者에게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하며 當事者가 一定한 期間이 아닌 不定期間에 연고로인한 故障으로 特許廳에 繼續中인 節次를 繼續할 수 없을 때에는 特許廳長 또는 審判長은 決定으로서 그 中止를 命할 수 있다(商標法第7條 特許法第7條 同施行令第9條)

③ 證明의 請求와 書類提出

① 證明의 請求

商標에 關한 證明・登錄證의 寫本・書類의 謄本이나 抄本 등을 請求하거나 書類의 閱覽・謄寫를 필요로 하는 자는 特許廳長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特許廳長은 出願公告 또는 出願公開되지 아니한 出願에 關한 書類와 公共의 秩序 또는 善良한 風俗을 문란하게 하거나 公衆의 衛生을 해할 염려가 있는 書類는 이를 許可하지 아니할 수 있다(商標法第7條 特許法第38條).

② 書類의 提出命令

「審查官 또는 審判長은 審查・審判・抗告審判 또는

再審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當事者·異議申請人 또는 參加人·參加申請人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書類·見本 또는 기타의 물건에 제출을 명할수 있다(商標法施行規則第15條 特許法施行規則18조1항).

이렇게 提出된 書類·見本 또는 기타의 물건은 審查·審判·抗告審判 또는 再審이 확정된 후에 이를 제출인에게 찾아가도록 통지하여야 한다(商標法施行規則第15條 特許法施行規則 18조3항).

④ 書類의 搬出 禁止 등

審查·審判·再審書類 및 登錄原簿는 이를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商標法第7條 特許法第39條1項).

審查·審判 및 再審으로 係屬 중에 있는 사건의 내용 또는 查定·審決 및 決定의 内容에 關하여는鑑定·證言 또는 質疑에 應答할 수 없다(商標法第7條 特許法第39條2項).

3. 商標出願의 節次

(1) 意義

商標登錄을 받고자 하는자는 所定의 記載事項과 商標을 表示하는 書面 및 出願料等을添附한 商標登錄出願書를 特許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하며 數人이 共同으로 商標登錄을 出願할 경우에는 同業임을 立證하는 書面을 提出하여야 한다(商標法第10條).

「出願」이란 商標를 登錄받기 위하여 必要한 書類를 提出하는 節次로서 審查의 對象이 될 節次를 意味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出願은 반드시 書面에 의하여 提出하여야 하는 「書面主義」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書面主義를 採擇하고 있으며 모든 書類는 一定한 樣式에 記載하여 提出하는 「樣式主義」가 있는가 하면 一定한 樣式이 必要없는 非樣式主義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樣式主義를 採擇하고 있다. 또한 「國語主義」에 입각하여 特許廳에 提出하는 書類는 國語로 記載하여야 하며 委任狀·國籍證明書·優先權主張에 關한 書類 및 其他的

書類로서 外國語로 記載한 것에는 原文과 더불어 國語翻譯文을 첨부하여야 한다(商標法施行規則第15條 特許法施行規則第1條3條).

(2) 商標出願의 要件

① 商標出願書

商標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事項을 記載한 商標登錄出願書를 特許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商標法第10條).

② 商標登錄出願人の 姓名이나 名稱 및 住所나 營業所(法人에 있어서는 그代表者の 姓名도 記載하여야 함)

③ 商標登錄出願人の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나 營業所

④ 商標

⑤ 指定商品 및 그 區分

⑥ 提出年月日

⑦ 數人이 共同하여 商標登錄出願을 하는 경우에는 同業임을 立證하는 書面

⑧ 團體標章을 받고자하는 경우는 團體標章의 使用에 關한 다음 事項을 定한 定款

⑨ 團體標章을 使用하는 者의 範圍에 關한 事項

⑩ 團體標章의 使用條件에 關한 事項

⑪ 團體標章의 使用條件를 違反한者에 對한 制裁에 關한 事項

⑫ 其他 團體標章의 使用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

⑬ 商標見本 10通을添附한 書面 1通(가로와 세로가 각각 7센티미터 以內이어야하고 紙質이 강韧하며 黑白色으로 하여야 함)

⑭ 印版(가로 세로가 7센티미터 以內이고 두께가 5. 미리미터 이내인 고무판·銅版·또는 亞鉛版이어야 함)

⑮ 未成年者등의 出願에 있어서는 住民登錄證謄本(未成年者나 限定治產者 및 禁治產者는 法定代理人에 의해서 出願할 수 있으나 父나 母가 있으면 住民登錄證을 첨부하여야하고 後見인이 있을 경우에는 後見人에 의해서 出願할 수 있다). <계속>

■ 韓國發明特許協會 캠페인 ■

낭비없는	알뜰피서	가족끼리	오손도손
정직앞에	불신없고	공정앞에	불평없다
에너지는	국력이다	아껴써서	애국하자

新刊案内

C I P와 商標戰略

辨理士 金 延 淑 著

가격: 8,000원

판매처: 韓國發明特許協會
資料販賣센터